

전용계좌개설(변경·추가)신고서

신 고 인	① 공익법인명		② 사업자등록번호 (고유번호)	
	③ 대 표 자		④ 주민등록번호	
	⑤ 소 재 지	(☎ :)		
⑥ 개설금융기관		⑦ 예금종류	⑧ 계좌번호	⑨ 구 분

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」 제43조의4제10항에 따라 전용계좌[☐개설 · ☐변경 · ☐추가] 신고를 합니다.

년 월 일

신 고 인

(서명 또는 인)

세 무 서 장 귀 하

※ 첨부서류 : 개설 또는 추가하는 통장 사본 1부

※ 작성방법

1. 이 서식은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50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전용계좌를 개설·변경·추가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서식입니다.
2. 공익법인등은 최초로 공익법인등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.
3. 전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.
4. 전용계좌는 1개의 계좌를 2 이상의 사업장에 대한 전용계좌로 신고할 수 있으며, 사업장별로 2개 이상의 전용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.
5. ⑨구분란에는 개설, 추가, 폐지 등으로 적습니다.